

학생지도교수규정

1996.10.01.제정 2001.03.01.일부개정 2018.07.01.일부개정 2021.06.01.일부개정

<학사관리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각 대학의 학생지도를 전담할 학생지도 담당교수제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담당업무) 학생지도 담당교수는 해당대학에 소속한 학생의 제반 지도업무에 관하여 학장 및 교무처장을 보좌한다. 다만, 이를 위한 기구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. (개정 2018.7.1., 2021.6.1.)

제 3 조 (임명) 각 대학의 학급별 학생지도 담당교수는 해당대학 소속 및 대학관련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4 조 (회의) 교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각 대학의 학생지도담당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8.7.1., 2021.6.1.)

제 5 조 (예산) 교무처장은 소관예산 중의 일부를 본 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8.7.1., 2021.6.1.)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